

◆머느리곤씨 열전 22-1

괴담 배상열의 어머니 안동 권씨 (북야공파 28世, 권경여權慶餘의 딸)



괴담 배상열 세미나가 열리고 그의 이런 다재다능한 재능은 어머니에게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사진 권오철

지난 8월 21일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청소년센터 대강당에서는 모처럼 봉화군의 인물, 흥해 배씨 괴담(槐譚) 배상열에 대한 학술 세미나가 300여명의 청중이 모인 가운데 융중 거행되었다.

인구 3만명의 작은 군이지만 모처럼 봉화가 낳은 신박한 인물의 재발견에 모두 흥분을 감추지 못했고, 발표하는 연구자나 그 어려운 내용을 알리고 애쓰는 청중들, 특히 배씨 종중원들은 이런 인물을 잘 몰랐다는 데 대한 부끄러움, 밝힐 수록 더 훌륭한 업적을 남긴 천재 조상에 대한 자랑스러움, 서른의 나이에 삶을 마감한 그에 대한 연민과 또 더 살았으면 조선.중후반 독보적인 사상가로 다산(茶山)에 맞먹는 큰인물로 나라에 큰 역할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등 만감이 교차하는 것 같았다.

괴담(槐譚) 배상열(裴相說,1759~1789)은 봉화에

서 태어났다. 실제 그가 태어날 때인 1760년은 안동부(현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서평2리 녹동)였다.

5~6세에 이미 글을 읽고 썼으며, 운순하고 단아한 용모와 성품을 가졌다.

일찍부터 천지조화와 우주의 이치에 관심을 가져 11세에 수학하러 갔다. 그 스승이 배상열의 능력을 파악하려고 글을 지으라고 하자 즉석에서 “수금목토수 인의예지학(水土木金修 仁義禮智學)”이라 답하여 온 좌중을 깜짝 놀라게 했으며 이후로 신동, 귀재로 찬사를 받았다.

15세에 “역학계몽(易學啓蒙)”, “율려신서(律呂新書)” 등의 천문·역학 서적을 탐독하여 상수학(象數學)에 깊은 조예를 가지게 되었다.

21세에 안동부 일직현(一直縣) 소호(蘇湖, 현 경상북도 안동시 일직면 마호리관련항목 보기)에서

동성상응(同聲相應)

권용만 교수(동양철학, 심리학박사)

주역 건괘 문언전에 ‘동성상응(同聲相應), 동기상구(同氣相求)’라는 말이 있다.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근본을 둔 것은 위와 친하고, 땅에 근본을 둔 것은 아래와 친하니 각각 그 류(類)를 좇는다”고 했다.

위에서 동성상응이란 같은 소리는 서로 응한다는 말이다. 즉 동성(同聲)은 동성(동성(同性)이다. 필자는 글, 소리의 뜻을 찾아 만물의 이치를 살핀다. 같은 소리, 같은 파장, 같은 색깔, 같은 모양은 서로간에 만나다. 같은 모양은 서로 만나 짝값을 맺고, 같은 색은 서로 만나 색을 쓴다. 끼리끼리 만나는 유유상종(類類相從)인 것이다.

병은 한마디로 말하여 통(痛, 아픔, 苦痛)이다! 생명은 순환이라 했다. 통(痛)의 원인은 통(通)이 되질 않는다(不通, 순환장애))는 말이다. 이것이 바



로 병이다. 따라서 병을 고치는 유일한 방법은 뚫어 통하게 하는 것인데, 통(通)하려면 통(痛)이 따라야 한다. 옛말에도 아파야 낫는다고 했다. 필자가 천지인(天地人)에 침을 놓으면 하루 이틀은 아프다가 낫는 것도 이 때문이다.

병의 결과는 열(炎, 熱)과 담(痰, 冷)으로 나타나는데, 두 글자 모두 열(炎)이 들어가 있다. 열(炎)은 불화(火) 자가 둘이라 열이 되고, 열은 땀(汗)이 된다. 또한 땀은 그 맛이 짜다(鹽). 즉, 열(炎)과 염(鹽)은 하나이다. 그래서 염(鹽)을 제거하려면 열(鹽)을 써야 한다. 다시 말씀 드리자면 열(炎)을 염(鹽)으로 제거치 않으면 망자에게 하는 염(殞)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시종의 도(始終의 道)

생자필멸(生者必滅)이라 만물에는 반드시 시작과 끝이 있게 마련이다.

풀 한 포기, 돌 하나에서부터 동물과 사람, 별들까지도 우주 안에서 생겨 났으니 언젠가는 그 수명을 다하고 사라지게 된다. 우주가 없는데 영원하자는 천당과 극락, 지옥과 영혼이 있거나 하는 것일까?

속 깊은 이야기는 다음 장으로 미루고, 몸 이야기나 계속하자.

후학을 지도하던 퇴계학맥의 주요 계승자인 대신 이상정(李象靖)의 문하에 들어갔다. 이상정은 “그대는 천문·성력(星曆)을 먼저 했으니, 이제는 마땅히 도학(道學)을 공부하라”라고 가르쳤다. 이때부터 “대학(大學)”을 연구하면서 일취월장하여 일가의 경지를 이루었으며 그 결과 “사서찬요(四書纂要)” 등이 저술되었다. 이상정과 이기(理氣)와 의리지학(義理之學) 등에 관해 질의와 토론을 주고받았으며 그 내용은 “호산종학록(湖山從學錄)”에 남기고 있다.

그 뒤 29세에는 이상정이 이미 죽은 뒤여서 소산(小山) 이광정(李光靖)을 찾아가 문인이 되었다. 배상열은 거문고 타기를 좋아하는 풍류취사이기도 하면서 벼슬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특히 산수를 즐겨 집 근처 괴화나무 아래에 작은 연못을 파고는 직방담(直方塘)이라는 이름을 짓고 늘 여기에서 독서하였기 때문에 배상열은 ‘괴담처사(槐潭處士)’라고 불렸다. 1789년 31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30세의 나이로 요절했지만 「도학육도(道學六圖)」, 「서계쇄록(書計鎖錄)」, 「사서어의(四書疑義)」, 「성리찬요(性理纂要)」, 「사서찬요(四書纂要)」, 「계몽도해(啓蒙圖解)」, 「심경품목(心經稟目)」, 「을수제요(乙數提要)」 등 많은 저술을 남겼다. (다음호에 계속) 권오철 기자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머리가 먼저(始)나오고 발이 맨 나중(終)에 나온다.

분해는 조립의 역순(逆順)이고 조립은 분해의 역순이다.

이것은 만고불변(萬古不變)의 진리이다. 몸이 고장(病) 났으면 종(終)에서 살퍼서 시(始)로 들어가야 한다. 시(始, 하나님, 부처님, 근원)은 감히 우리들 인간으로서서는 알 수가 없다.

만법귀일(萬法歸一)이라 했는데, 어디가 고장이 든지 간에 시(始)와 연결만 하면 된다. 만인이 일상에서 지친 몸을 집에서 쉬면서 재충전하듯이 말이다. 우주에 만물이 있으나 이치는 하나인데 과학이니, 학문이니 하면서 무수히 나누어 보려고 하니 아는 게 없을 수밖에 없다.

암 전문병원장도 주고 말며, 안과전문의를 찾아가 보면 거의 안경을 끼고 있다. 참 우스운 세상이다. 지금 필자에게 무슨 말을 하냐고 반문할 사람이 많을 것이다.

몸이든, 세상이든 사통팔달(四通八達)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하나라도 막히면 고장이요 병인 것이다. 발가락(絃) 끝만 짚 두르면 머리(始, —, 하나님, 부처님)와 통하여 전기가 흘러 사지육신(四肢肉身)을 뚫어주어 만병이 물러 간다는 소리이다.



축산가든”으로 이동하여 떡과 소불고기를 곁들인 식사를 하였다.

이 자리에서 권계동 고문과 부산총친회 권영현 회장과 여러분들이 건배사를 하여 분위기를 북돋우면서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가운데 점심을 들고 11월 2일에 병행하는 파조부군 추향에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고 오후 2시경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권석순 북야공파총회 사무국장

아내의 생일이나 결혼기념일은 잊어버려도 잊지 말아야 할 세법상 신고기일과 납부기일

I. 개요

1.헌법상 국민의 의무와 납세의무의 성립 및 무신고와 체납에 따른 가산세

헌법 제38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납세의무는 조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의 충족에 따라 법률상 당연히 조세에 관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되고, 조세채권자인 국가 등은 조세채무자인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조세채권에대한 청구권을 취득하며, 납세자는 이에 상응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조세징수는 일반징수절차, 특별징수절차, 강제징수로 구분되며, 납세의무자는 납세의무의 내용이 되는 조세를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소멸된다.

체납이란 납세자가 확정된 조세채무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것을 말하며, 조세가 체납된 경우 정부는 행정상의 강제력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 등 강제징수절차에 의하여 체납된 조세를 징수하며, 이 경우에 본고에서 설명하는 가산세 문제가 반드시 발생한다.

이 가산세는 세법상 신고기일이나 납부기일을 잊은 경우에 반드시 부과되는 것이므로, 아내의 생일이나 결혼기념일을 잊은 경우보다 더욱 심각한 후유증이 생기므로 사업자들은 그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한다.

II. 가산세의 의의와 성격

1. 가산세의 의의와 부과

가산세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며, 세법상의 각종 협력의무의 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 행정벌이라고 할 수 있다.

III. 가산세의 종류

가산세는 모든 세금의 납세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의무 불이행은 크게 나누면 신고의무 불이행과 납부의무 불이행으로 나눌 수 있는데, 본고에서는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속·증여세법에 규정된 각종 가산세에 관하여 설명코자 한다.

가. 국세기본법상의 가산세

1) 무신고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국세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을 부과하고,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40%(역외거래 60%)와 수입금액의 0.14% 중 큰 금액을 부과

2)과소신고 및 초과환급 신고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이나 납부세액을 신고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많이 신고(초과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세액의 10%의 가산세를 적용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 신고한 경우-부정과소신고 납부세액의 40%(역외거래 60%)와 부정과소신고수입금액의 0.14% 중 큰 금액과 (과소신고납부세액-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10%를 합한 금액

3)납부불성실가산세와 환급불성실가산세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적게납부(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그러나 환급



권오형

경영학박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초과환급)받은 경우에는 환급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과소납부세액)*기간×0.022%를 부과하며, 기간은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 납부일(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로 한다.

환급불성실 가산세의 계산도 납부불성실가산세와 동일하게 계산한다.

4) 원천징수 등 납부불성실가산세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납세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세법에 정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납(과소납부)세액의 3%와 미납(과소납부세액)*기간×2.2/10,000 달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미납세액의 50%를 한도로 한다.

나.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1)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가)미등록가산세-사업자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나)허위등록 가산세-사업자가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개시일부터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세금계산서관련 가산세

다음의 경우에는 1%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세금계산서를 지연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내용 중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른 경우,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를 지연 전송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서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 규정에 위반한 경우

3)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2%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위장 발급하거나 위장 수취한 경우, 자료상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경우 등

4)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치 않거나, 기재내용이 불성실한 경우, 지연 제출한 경우에는 1%(0.5%)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부과

5) 공급받은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업자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는 1%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6)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업종과 산후조리원, 부동산중개업, 예상장 등의 사업자가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1%의 가산세를 부과

7)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미제출하거나 부실 기재한 경우에는 1%의 가산세를 부과

부호장공파 제례위원들 파조 추향제에 관한 토의

부호장공파(副戶長公派: 회장 권헌종) 제례위원들은 파조(派祖) 추향제(秋享祭) 실시에 관한 토의를 개최하였다.

10월 1일 오전 10시 30분 안동시 어가골길(태화동) 일원정(一源亭) 정자에서 권헌종 파종회장을 비롯하여 권중대, 권오영 부회장, 권대수, 권경탁 제례위원 6명 등 모두 10명이 참석, 오는 10월 12일 파조 추향제 봉행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를 토의하였다.

권태욱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의에서 권기병 도유사(都宥司)는 인사말에서 “이번 추향제는 작년처럼 제물을 준비하고 잔자(贊者)는 어려운 한문으로 쓴 홀기(勿記)를 창홀(唱飮)할 때 짙은 세대 참제원들을 위해 알아듣기 쉽고 이해가 빨리되는 한글로 해석을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권헌종 회장은 인사말에서 “바쁘게도 불구하고 시간과 노력을 들여 참석하여주셔서 대단히 고맙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이번 추향제 때 헌관 3명, 축관 1명, 잔자 1명을 선정하고 점심은 부인회원을 동원, 음식을



장만할 계획이었으나 취소하고 개당 1만2천~1만5천 원짜리 도시락을 준비하기로 했다. 올해 아헌관을 맡은 죽천은 내년 춘, 후 향사 때 도유사를 맡기로 결정했다.

2시간 끝에 토의를 마친 회장과 제례위원들은 시내 옥동에 자리 잡고 있는 ‘홍두깨식당’으로 이동, 들깨 국수로 점심을 먹고 헤어졌다.

권영건 보도부장

추밀공파종회 회장단 확대 회의 개최

추밀공파종회(회장 권오돈)는 10월 4일 11시 추밀공파종회 사무실에서 권오돈 회장, 권병선 창화공 종중 회장, 권병돈 전 정간공 종중 회장, 권장택 정현공 종중 회장, 권병돈 정간공 종중 회장, 권경일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추밀공파종회 회장단 확대회의를 개최했다.

이 날 회장단 확대회의는 권경일 사무처장의 사회로 개회 선언, 시조 및 추밀공에 대한 망배, 회장 인사, 추향제 준비 상황, 추밀공과 충헌공 환관 선언, 회관 마련 헌정금 현황과 대책, 기타 토의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권오돈 회장은 인사말에서 “뽕게 되어 반갑다. 건강 문제로 오시지 못한 분도 계시고 바빠서 오시지 못한 분도 계시어서 참석이 부진하다. 앞으로 건강 잘 챙기시고 오늘 좋은 의견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권경일 사무처장은 권윤장군 이치대청 기림제에

종원 76명이 전국 각지에서 참석한 가운데 참의공 종중에서 150만원, 오향공 종중에서 100만원을 찬조하여 성황리에 봉행하였다고 보고했다. 추밀공과 충헌공 추향제를 위해 제사 제물 계약과 대형버스 2대 대절 등 추향제 준비사항 등에 대해 보고했다.

이어서 확대회의에서는 추향제 때 정기총회를 실시하는 문제에 대해 심도 깊은 토의를 진행했다. 요지는 정기총회는 정관에 당해연도 결산일은 10월 31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결산이 정리된 상태에서 정기총회를 실시해야 한다. 그래서 만약 추향제를 10월 20일에 봉행하게 된다면 아직 예결산이 완료되지 않는 상태에서 정기총회를 실시하게 되므로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다. 27조에는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1월 1일부터 익년 10월 말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15조에는 정기총회는 대의원들로 구성하여 매년 12월 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정기총회를 공지할 때는 상정할 안건을 공지해야 법적 효력이 있음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권경일 사무처장은 총회를 별도로 개최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날 확대 회의는 11시부터 13시 10분까지 진행될 정도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회의에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관 조항 개정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할 듯하다.

권행만 편집국장